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이하 “양측” 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수입식품 관련 모든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전안전관리(현지실사 포함),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라 한다) 수입식품안전 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노르웨이 식품법과 동물복지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식품 안전관리를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항 목적

동 약정은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적용범위

1. 동 약정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원료수산물동식물을 포함한 수산물.
 - 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가열·자숙·건조·염장·염수장·훈제·냉장·냉동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동식물.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한 수산물은 이 약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3항 운영절차

1.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다. 식품안전청은 업체명, 주소 및 양측이 합의한 기타 정보가 포함된 승인받은 제조업체의 명단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한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식품안전청은 승인 받은 제조업체가 한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승인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식품안전청은 승인 받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승인 받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4. 동 약정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식품안전청은 식약처가 노르웨이의 승인 받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항 위생증명서 발급

1. 식품안전청은 한국에 수출되는 수산물이 승인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음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2.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
3. 노르웨이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승인 받은 제조업체명 및 등록 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기한다.

제5항 통보절차

1.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즉시 식품안전청에 통보하고 해당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식품안전청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러한 경우, 식약처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2. 상기 언급된 식약처의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은 식약처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일방이 상대측 조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요청이 국제적 약속에 부합할 경우 상대측은 요청에 응한다.
3.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측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6항 접촉창구

양측은 이로써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기타 사안의 논의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 창구를 아래와 같이 개설한다.

1. 한국 측 접촉 창구: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노르웨이 측 접촉 창구: 식품안전청 수산물 수출입과

제7항 인적교류

양측은 검사관 또는 전문가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이동 및 숙박비용은 검사관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수산물 위생검사 및 검사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제8항 일반조항

1. 동 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동 약정은 각 국의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이행되며 양측의 예산 및 인력 운용에 따른다.

제9항 이견 해결

동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견해 차이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항 효력, 기간 및 개정

1. 동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되며, 5년 간 유효하다. 일방이 동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 동 약정은 양측의 서면에 의한 상호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동 약정서는 2020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에서 각자 동등히 유효한 한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청장

